

## 서울특별시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729
------	-----

2005년 6월 28일  
교육문화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년 5월 6일, 서울특별시교육감

나. 회부일자 : 2005년 5월 15일

다. 상정일자 : 제156회 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

(2005.5.20 상정·심사보류)

제28회 정례회 제4차 교육문화위원회

(2005.6.28 상정·심사·수정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교육정책국장 : 김영일)

## ○ 제정이유와 근거는

- 국가적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교육청 산하에 평생학습관은 4개 밖에 없음.(고덕, 마포, 영등포, 중계평생학습관)
- 평생교육법 제13조에 의하면, 평생학습관의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되, 지역의 특성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평생교육시설이나 단체에서 희망하면, 교육감이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에는 도서관, 문화원, 박물관, 복지관, 여성관련기관 등 평생교육시설과 단체들이 많이 있음.

- 이번에 상정한 조례에 교육감이 이러한 시설들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다면, 이미 개발된 여러 가지 좋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기도 하고, 네트워크도 구성해서 서울시민들이 지금보다 효율적인 평생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됨.

## ○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 평생학습관 지정과 평생학습관 운영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평생교육시설 및 단체 중에서 평생학습관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한 곳을 지정하여 보다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서울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 아울러, 기존의 평생학습관이나 앞으로 지정하여 운영될 평생학습관의 좀더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 전문가 및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양재대)

## □ 본 조례안의 제정 배경 및 취지

- 평생교육법이 1999년도에 제정되어 평생학습관의 운영과 평생교육시설 등의 활용방안이 마련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교육위원회의 미온적인 태도로 관련 근거 규정이 마련되지 못하였으나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평생교육법에 의거, 평생교육시설이나 단체를 평생학습관으로 교육감이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당해 평생학습관에 「평생학습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

- 평생교육시설이나 단체는 공공시설에 한하며, 공공도서관, 문화원, 여성회관, 여성인력개발센터, 청소년수련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등을 의미함.

## □ 평생학습관 설치의 필요성

- 그동안 평생교육법이 통과(1999.8.31)된 지 6년이 되었고, 국민의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지역은 고작 4개 평생학습관만 설치되어 있는 실정임.
- 부산광역시 11개, 경기도 34개 등 여타 시·도와 비교하면 서울은 타 지역에 비해 평생학습관 수가 월등히 적으며, 이를 전국 단위의 백분율로 볼 때 1.7%에 불과하고 정치·경제·교육·문화의 중심지라는 면에서 뿐만 아니라 인구 및 역사적 전통에서도 수도 서울의 위상에 맞지 않음.
- 따라서, 서울 지역에 평생교육을 담당할 평생교육기관을 확대하고, 동시에 전문적이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평생학습관 운영위원회」 설치하는 것은 평생교육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하면 늦어진 감이 있으나 타당한 조치로 사료됨.

□ 수정 또는 재검토의 여지가 있는 사항

- 안 제3조의 평생학습관의 지정대상에 대해 세부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데 평생학습관의 지정대상이 되는 주요 평생교육시설 및 단체의 범위에 대해서는 서울지역에 평생교육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시설단체가 871개나 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예) 공공도서관, 문화원, 여성회관, 여성인력개발센터, 청소년수련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 안 제5조의 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의 설치를 평생학습관마다 설치토록 되어 있어 위원회가 남설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역교육청별로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안 제6조의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당연직 위원인 평생학습관의 장(현재 5급~3급 공무원)이 자치단체 의원 및 관계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 격에 맞지 않으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 호선토록 하는 것은 자기모순에 빠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사료됨.
- 또한, 평생학습관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 7~15인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바, 운영위원 전체의 1/2이상은 반드시 학식, 경력 등에서 평생교육 분야와 관련하여 일정 이상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자로 구성하는 것이 ‘평생교육관의 전문적인 관리 및 운영의 활성화’라는 본 조례의 취지에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8조의 “개의”는 “개회”로 자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되면 경비의 보조 및 위원회 위원에 대한 회의참석수당과 여비 등 예산 수반이 됨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출시 예산조치에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평생학습관의 운영에는 필히 예산이 수반될 것이 예상되므로 예산확보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질문 : 동 조례안 제3조 평생학습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조례에 규정하여야 함에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은 문제가 있고 안 제6조 위원회의 구성에서도 평생교육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함.
- 답변 : 지적하신 사항을 보완하겠습니다.
- 질문 : 평생학습관을 양보다는 질적인 차원에서 운영방안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답변 : 평생학습관의 설치·확대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정보를 용이하게 제공할 수 있음.
- 질문 :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 평생학습관이 다른 평생교육시설과 차별화될 수 있는 운영프로그램을 제시하기 바람.
- 답변 : 운영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전원 찬성)

가. 수정이유

- 평생학습관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규칙이 아닌 조례에 포함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추가 보완하고
- 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 전문성을 반영하기 위해 평생교육 전문가를 과반수 확보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임방법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수정 주요골자

- “평생학습관의 지정 대상을 명시하고 지정기간을 3년으로 정함.(안 제3조)
- 평생교육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의 위촉대상을 일부 조정함.(안 제6조)
- “수당과 여비” 조항중 단서내용을 삭제함.(안 제10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